

「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」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,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행할 수 있도록 신산업 책임보험, 글로벌 진출(현지 실증, 해외 인증) 프로그램을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. 09. 05.

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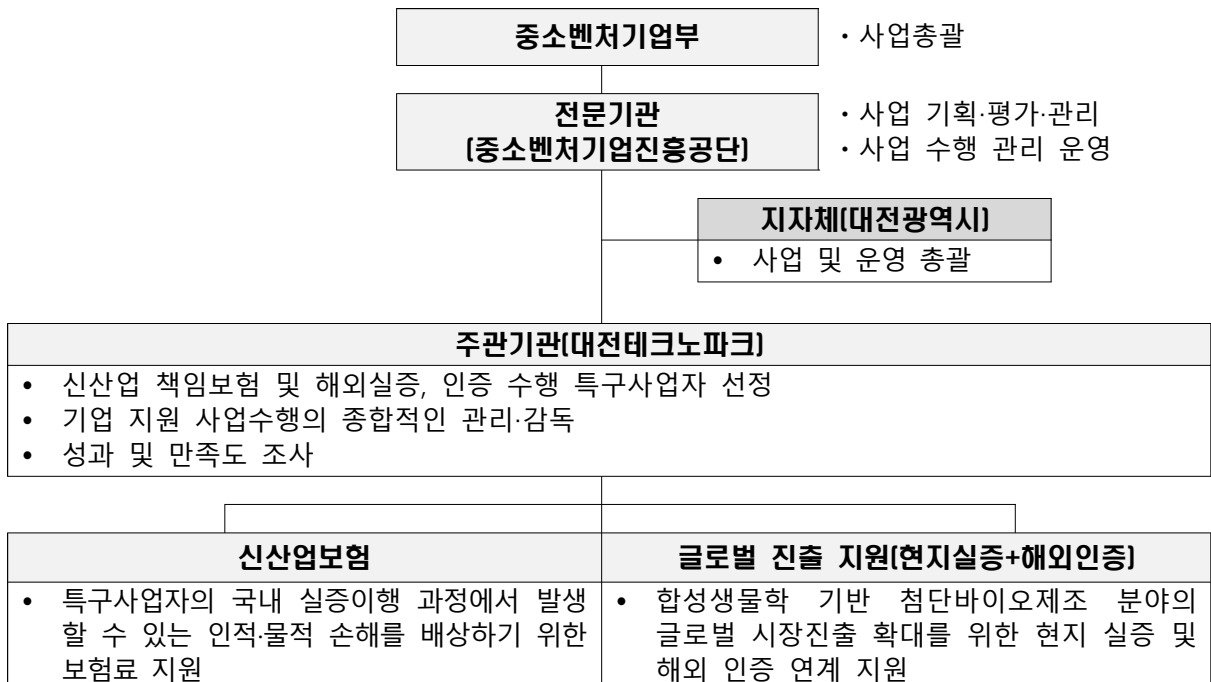
1

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

- 국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고, 지정된 특구사업자의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
- 첨단 바이오제조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

나. 추진체계



2

지원내용

가. 지원방식 및 대상

- 공모방식 : 자유공모
- 지원대상 : 「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」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-59호)에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<붙임3> 참조

순번	지역	글로벌혁신특구명	특구 지정일자
1	대전광역시	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	2025. 5. 30

나. 지원규모 및 기간

- 지원 규모

순번	사업내용	지원기업 수	기업당 지원(국비)	기업당 지원(자병비)	기업당 지원(합계)	비고 (민간투입금必)
1	신산업 책임보험	23개 기업(기관) 내외	4,530천원	1,043천원	5,573천원	900천원
2	글로벌 진출지원 (현지실증+해외인증)	8개 기업(기관) 내외	233,857천원	58,987천원	292,844천원	42,029천원

- *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지원기간

구분	1차연도(7개월)	2차연도(12개월)	3차연도(12개월)	4차연도(12개월)
연차별 기간	2025. 6 ~ 2025. 12	2026. 1 ~ 2026. 12	2027. 1 ~ 2027. 12	2028. 1 ~ 2028. 12

- *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다. 신청자격

-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「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」에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
 - *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('25.5.20),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-59호('25.5.30)

-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(수행기관 등의 자격)에 해당하는 자
- 부여받은 실증특례확인서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(해외실증·인증)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

라. 지원조건

구분	내용								
지원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분야 중복 지원 가능 ○ 각 과제별로 지원기간에 대해 전문기관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, 주관기관(대전테크노파크)과 협약 체결 ○ 정부지원금(국비)은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*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								
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현금 부담 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소기업</td> <td>민간부담금의 30% 이상 현금 부담</td> </tr> <tr> <td>중견기업</td> <td>민간부담금의 40% 이상 현금 부담</td> </tr> <tr> <td>비영리법인</td> <td>필요시 부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현금 부담 비율	중소기업	민간부담금의 30% 이상 현금 부담	중견기업	민간부담금의 40% 이상 현금 부담	비영리법인	필요시 부담
구분	현금 부담 비율								
중소기업	민간부담금의 30% 이상 현금 부담								
중견기업	민간부담금의 40% 이상 현금 부담								
비영리법인	필요시 부담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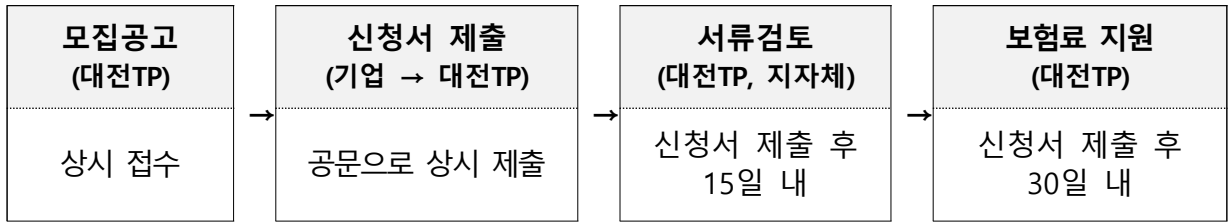
마.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

1)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

- 지원내용 : 책임보험 가입료 최대 5,573천원/년 (23개사 이내)
- (지원금액) 기업당 국비 4,530천원, 지방비 1,043천원(민간 900천원 이상 매칭 必)

지원유형	지원방향
책임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례와 관련된 국내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필수, 이에 대한 일부 보험료 지원 ※ 법적 보상한도(대인 1.8억원, 사고당 10억원 이내) 적용 필수 ※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: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 ※ 실증특례·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(前)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: 사고 책임은 100%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,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

○ 지원절차



○ 선정절차: 책임보험 가입 완료 이후 책임보험 내역 접수(yohn06@djtp.or.kr),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료 지원

○ 제출서류 :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명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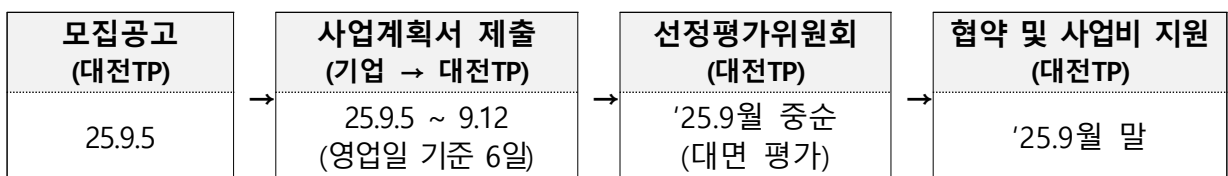
No	제출서류	파일형태	비고
1	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	PDF	붙임1
2	책임보험 증권	PDF	
3	책임보험 완납 증명서	PDF	관련 증명서
4	통장 사본	PDF	

2) 글로벌 진출(현지실증+해외인증) 지원

○ 지원내용 : 글로벌 진출(현지실증+해외인증) 지원 최대 292,844천원/년 내외
- (지원금액) 기업당 국비 233,857천원, 지방비 58,987천원(민간 42,029천원 이상 매칭 必)

지원유형	지원방향
글로벌 진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현지실증) 해외에서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지만,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 클러스터·대학·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· (해외인증) 국내 기준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신기술 해외인증의 경우 국내에서 취득이 어려워, 글로벌 인증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지원절차



*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선정절차: 공고를 통한 실증 및 인증계획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
- (선정평가) 관련 전문가 및 TP 등 5인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

- (평가방식)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적정성 검토

*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대표자 및 경영관리 (30점)	· 대표자 전문성, 신뢰성	20
	· 해외시장 진출 의지	5
	· 경영관리수준	5
기술성 및 사업성 (40점)	· 기술 우수성/차별성 - 지원에 따른 개발 기술(제품)의 우수성	10
	· 연구/기술 역량 - 글로벌 진출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방안	10
	· 해외실증계획의 우수성 -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연계를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-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등	10
	· 사업성 -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	10
	· 지역사회 기여/영향력 - 본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목적과의 부합성	30
IV. 가점사항	· 중소기업	5
	· 해당국가 법인(지사) 보유	5
	· 지역내 본사/지사/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	5
합계(100점)		100

[실증 및 인증 선정평가지표(안)]

○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파일형태	비고
1	글로벌 진출지원 신청서	PDF	붙임2
2	기업 부담 현금·현물 납입 약속서	PDF	붙임2_서식 제1호
3	수행계획서	HWP	붙임2_서식 제2호
4	법인등기부등본	PDF	
5	사업자등록증 사본	PDF	
6	최근 3년간 재무제표(2022~2024)	PDF	대전기업정보포털 원클릭서비스 신청시 자동 업로드
7	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	PDF	
8	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	PDF	
9	통장 사본	PDF	

바. 사업비의 지급

- 정부지원금(국비, 지방비)은 최종 협약 후 분할 지급
 - (1차) 협약 후 30일 이내 'e나라도움' 시스템을 통한 국비(50%)지급
 - (2차) '25년 11월 중 국비(50%) 지급
 - (3차) '25년 12월 중 지방비(100%) 지급

- 민간부담금은 수혜기업이 선지급 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
 - ※ 총 사업비 기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
 - ※ 국비는 'e나라도움'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,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오프라인 관리 및 사용

-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
 - 사업비는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가입, 글로벌 진출(현지실증 및 해외인증)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

구 분	내 용	보조세목
보험료	•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	공공요금및제세
시험비	•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	일반수용비 등
컨설팅비	•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	일반수용비 등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(서비스)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도구, 데이터 등 구입비	재료비 등
외주 용역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(서비스)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일반용역비 등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	일반수용비, 일반용역비 등 (자본적 경비 제외)
인건비	•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지급하는 급여 ※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 ※ 정부지원금의 50% 까지 계상 가능	보수, 일용임금 등

구 분	내 용	보조세목
지급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,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통역비 등으로 집행 	일반수용비, 일반용역비 등
여비· 체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·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*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 	국내여비, 국외여비
광고 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(서비스)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	일반수용비 등
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 성능·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,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•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	임차료
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(지원금) 	민간경상보조
지원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•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·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• 시설비·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(특근매식비, 회의비, 사무용품 구입 등) 	-

3

지원제외 처리기준

○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

구 분	지원제외 대상			
공고 내용과의 부합성	○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			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	○ 휴·폐업 중인 기업			
	○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		
	○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. 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			
	○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·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			
	* 동일 대표자,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			
	○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			
	○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			
	○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			
	○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: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			
		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지원제외 업종
	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	
	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	
	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	
	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	
	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	
47859 中		성인용품 판매점		
47993 中		다단계 방문판매		
축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		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	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		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	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	
	91291	무도장 운영업		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				
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한 기업(주관) 수행가능 과제 수 제한	○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기업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			
	수행중 과제수	신규 신청가능 여부	신규 수행가능 과제수	
	2개	불가	불가	
	1개	가능	1개	
	0개	가능	2개	
- 단, 타 과제의 잔여기간이 협약 시작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, 사업화지원,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				
-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,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,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				

4

신청방법 및 서류

가.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							
공고기간	■ 2025. 9. 5.(금) ~ 2025. 9. 12.(금)							
접수기간	■ 2025. 9. 5.(금) ~ 2025. 9. 12.(금) *글로벌 진출(현지실증+해외인증) 지원에 한함							
서식교부	■ 서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jtp.or.kr) 및 대전기업정보포털(www.dips.or.kr)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							
접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미일 접수(yohn06@djtp.or.kr) ■ 글로벌 진출(현지실증+해외인증)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전기업정보포털(www.dips.or.kr) 온라인 접수 							
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사업 문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특구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기관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연락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대전)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특구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전테크노파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김영애 책임 yakim@djtp.or.kr / ☎ 042-930-4719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요한 책임 yohn06@djtp.or.kr / ☎ 042-930-471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전기업정보포털(DIPS) 문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화팀 박유강 책임(042-930-4824) 	특구	기관	연락처	(대전)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특구	대전테크노파크	김영애 책임 yakim@djtp.or.kr / ☎ 042-930-4719	이요한 책임 yohn06@djtp.or.kr / ☎ 042-930-4715
	특구	기관	연락처					
(대전)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 특구	대전테크노파크	김영애 책임 yakim@djtp.or.kr / ☎ 042-930-4719						
		이요한 책임 yohn06@djtp.or.kr / ☎ 042-930-4715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가 아닌 자의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 ■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, 사업계획서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■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■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중 타 지원과제와 중복수혜를 지양하기 위해 해외 실증 R&D 사업 등 재정지원과제 내 동일 항목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불가 							